

#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12

제출년월일 : 2006. 11.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이 제정시행(2006.5.24)됨에 따라 안산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이 경우에는 안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 나. 금고는 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 다. 금고지정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리, 시민이용 편의 등 5개 평가기준으로 정함(안 제4조).
- 라. 금고지정방법,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심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10조).
- 마. 시장은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한 후 금고로 지정된 금융 기관과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지사유 발생시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지토록 규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3호 중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치단체의 금고”를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개정함(안 부칙 제3항).

## □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6. 10. 31 ~ 11. 20(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고” 라 함은 자치단체의 장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 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 라 함은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 이라 함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 이라 함은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제3조 (금고지정) ①시장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안산시(이하 “시” 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 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안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 1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경우에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경기도의 금고를 시의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②금고는 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 ③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3. 시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③안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제1항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지정 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②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 약정체결일까지로 하되,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 (금고지정 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110일 전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금고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각종 법령·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 약정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4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 각종 기금 및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자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시 금고의 경우에는 약정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치단체의 금고”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한다.

소관 실·과		세 정 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권혁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외수입담당 김기서
	담당자 성명·전화	유영오 (행정 2185)

[별 표]

## 안산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배 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5)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0) - BIS 자기자본비율(7) - 자기자본이익률(5) - 무수익여신비율(5) - 대손충당금적립율(3)	35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5) 나. 시에 대한 대출금리(5)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18
3. 시민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가.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9) 다.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5)	19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5) 라. OCR센터 운영계획(3)	18
5. 시와 금고간 협력 사업 추진능력	가.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5) 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계획(5)	10

#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512
----------	------

제안년월일 : 2007. 4. 5.  
제 안 자 : 의회행정위원장

## 1. 수정이유

- 금고지정의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 중 일부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등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제3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함
- 제6조 제1항 제1호중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을 “안산시의회의원”으로 수정함

#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조 제1항 제3호를 동조 제1항 제2호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중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을 “안산시의회의원” 으로 한다.

#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3조(금고지정) ①(생략) 1. (생략) 2.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경기도의 금 고를 시의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생략)	제3조(금고지정) ①(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u>&lt; 삭제 &gt;</u> 2. (원안 제3호와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등) ①(생략) 1.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6조(위원회 구성등) ①(생략) 1. 안산시의회의원 2. ~ 3. (생략) ② ~ ④ (생략)